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43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제2211943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안 제10조의13 신설)	3
2. 재정지원 및 조사·평가 범위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포함(안 제12조제3호)	8
※ 참고자료	12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221194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
3. 회 부 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며,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그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황임.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또는 언덕이나 험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이 많아 버스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안 제10조의13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¹⁾ 또는 군수²⁾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선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운용 의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버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류소에 노선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기준 및 대상과 운행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말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2)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는 노선버스의 정류소, 환승센터 등에 설치되어 버스의 운행 및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버스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전광판 형태의 기기임.(참고1. 참조)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어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고나 운행지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버스운행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하여 버스노선 운행계획 수립 등 대중교통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현황(2021~2023) 】

(단위: 개소, 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버스정류소 수		157,933	160,308	168,015
실시간 도착정보단말기 설치 수	누적	41,915	45,738	47,669
	신규	-	3,823	1,931

* 실시간 도착정보단말기 신규 설치 수는 각 년도 실적 기준이며, 조사연도는 12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현황조사」 2022~2024년 각 년도

그러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보급률(2023년 12월 기준)은 전국 노선 버스 정류소(168,015개소)³⁾의 28.4%(47,669개소) 정도이고, 농어촌지역

3) 조사 대상 :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정류소

또는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도 지역의 보급률(충북 5.4%, 전북 6.0%)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 지역 등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참고2. 참조)

이에 개정안은 모든 노선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보급 확대는 대중교통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봄.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3년말 기준 30% 미만인 보급률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비(대당 설치비 1,153만원) 및 설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는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⁴⁾. (참고2. 참조)

둘째, 대중교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충분한 공급, 환경, 안전성, 편의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실정과 재정 여건에 맞는 시책과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보급이라는 특정 부문에

4) 2023년 12월 기준 총소요 약 1조 2,800억원(유지관리비 제외)

- BIT 미설치 정류장 120,346개소 × BIT 대당 설치비 11,530천원 = 1,280,077백만원

재정투입을 의무화할 경우 재정의 경직성과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셋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령⁵⁾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에 대한 평가 시 평가항목에 버스운행정보제공율⁶⁾을 반영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참고3. 참조)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 정류소 대부분이 이용자가 많지 않아 BIT 설치를 위한 예산 투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 BIT 설치·유지 보수 비용과 주민 편의 제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①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6) 버스운행정보제공율 산정: $(1 \times A \text{정류장 수} + 0.85 \times B \text{정류장 수} + 0.7 \times C \text{정류장 수}) / \text{전체 정류장 수}$

A: 정보제공장치 설치된 정류장, B: 스마트폰으로 정보확인 가능한 정류장,

C: 기타 방법으로 정보 확인 가능한 정류장

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기획재정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BIT 설치하는 것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해 자주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3) 지방자치단체

BIT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인구소멸지역인 군 단위에서는 이용 규모나 전기·통신 등 설치기반을 고려할 때 경제성, 실효성 부족함.(서산시, 옥천군, 인제군)

2. 재정지원 및 조사·평가 범위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포함(안 제12조 제3호)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현행법 제16조⁷⁾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현행법 제17조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평가 등의 대상에 포함되는 ‘대중교통시설’의 범위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확충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 ----- ----- ----- ----- ----- -----.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정비

현행	개정안
1. 2. (생략) 3. 환승시설 등 <u>대중교통시설</u> 의 확충 · 개선 4. ~ 6.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u>대중교통시설(버스정 보안내단말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 16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 호에서 같다)</u> ----- 4. ~ 6.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노선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대중교통시책평가의 범위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서 ‘대중교통시설’을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정의(제2조제3호가목9))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버스정보안내단말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기'는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며,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대중교통시책평가 시 이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관련 재정지원이나 조사·평가 등의 법적 근거는 현행규정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¹⁰⁾.

다만, 안 제12조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충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의무설치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국가의 재정소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853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운용 의무(안 제10조의13 신설)·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안 제12조)	4,223	4,307	-239	-243	-248	7,800	1,560
국비	2,112	2,154	-	-	-	4,265	853
지방비	2,112	2,154	-239	-243	-248	3,535	707

주 1.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비용만 추산한 결과로, 연도별 미설치 물량과 설치단가 및 운영비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재원분담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10) 이와 관련해서는, 안 제10조의13에 따라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시설의 정의규정(현행법 제2조제3호가목)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명시하는 것이 법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버스정보 제공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자체 평가는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대중교통시책평가를 통해 시행 중이므로 법개정 실익이 미미함.

2) 기획재정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BIT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자주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버스정보안내기(BIT) 종류 및 가격

○ LCD형 버스정보안내기

LCD 32인치 (독립형)	LCD 32인치 (거치형)	LCD 28.5인치 (거치형)	LCD 49인치 (독립형)
			
◆ 32인치 LCD PANNEL ◆ 알루미늄 1.6T ◆ 밝기 : 700 cd/m² ◆ IP44 방수, 방진	◆ 32인치 LCD PANNEL ◆ 알루미늄 1.6T ◆ 밝기 : 700 cd/m² ◆ IP44 방수, 방진	◆ 28.5인치 WIDE LCD PANNEL ◆ EGI강판 1.6T ◆ IP44 방수, 방진 ◆ 밝기 : 700 cd/m²	◆ 49인치 LCD PANNEL ◆ EGI강판 1.6T ◆ IP44 방수, 방진 ◆ 밝기 : 700 cd/m²
800만원	7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LED형 버스정보

LED 5단 18열 (거치형)	LED 3단 8열 (거치형)	LED 4단 12열 (거치형)	LED 3단 12열 (거치형)
			
◆ LED 48mm Full Color ◆ 밝기 : 4,000 cd/m² ◆ EGI강판 1.6T ◆ IP44 방수, 방진	◆ LED 64mm Full Color ◆ 밝기 : 4,000 cd/m² ◆ EGI강판 1.6T ◆ IP44 방수, 방진	◆ LED 64mm Full Color ◆ 밝기 : 4,000 cd/m² ◆ EGI강판 1.6T ◆ IP44 방수, 방진	◆ LED 64mm Full Color ◆ 밝기 : 4,000 cd/m² ◆ EGI강판 1.6T ◆ IP44 방수, 방진
1,000만원	800만원	900만원	850만원

참고 2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 현황(2023년 12월말 기준)

(단위:천원)

시도	정류장수 (개소)	BIT 설치현황 (개소)	BIT 보급률 (%)	BIT 미설치 정류장(개소) A	설치비 단가 B	총 소요비용 A*B	BIS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1년)	BIS 유지 보수비(1년)
전국	168,015	47,669	28.4	120,346	11,530	1,280,076,936	46,576,779	19,732,512
서울	10,812	6,815	63.0	3,997	16,000	63,952,000	4,615,078	1,516,791
부산	3,888	1,951	50.2	1,937	8,000	15,496,000	896,500	809,600
대구	3,667	1,495	40.8	2,172	20,000	43,440,000	1,617,823	1,490,336
인천	6,427	3,964	61.7	2,463	12,356	30,432,828	2,969,788	-
광주	2,378	1,185	49.8	1,193	12,000	14,316,000	1,395,768	612,797
대전	2,005	1,495	74.6	510	14,000	7,140,000	521,775	
울산	3,496	1,647	47.1	1,849	8,000	14,792,000	1,273,684	55,000
세종	1,298	678	52.2	620	10,000	6,200,000	373,922	358,965
경기	38,010	17,136	45.1	20,874	10,424	217,590,576	15,445,849	8,489,132
강원	11,041	1,295	11.7	9,746	10,148	98,902,408	1,513,929	970,434
충북	8,864	481	5.4	8,383	10,116	84,802,428	2,112,832	878,745
충남	15,021	1,605	10.7	13,416	10,367	139,083,672	2,584,273	1,176,428
전북	11,148	667	6.0	10,481	9,000	94,329,000	-	
전남	14,803	1,706	11.5	13,097	10,460	136,994,620	2,183,327	629,599
경북	15,875	1,849	11.6	14,026	11,452	160,625,752	5,040,214	2,056,082
경남	15,179	2,252	14.8	12,927	8,676	112,154,652	3,322,017	
제주	4,103	1,448	35.3	2,655	15,000	39,825,000	710,000	688,603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 3

대중교통시책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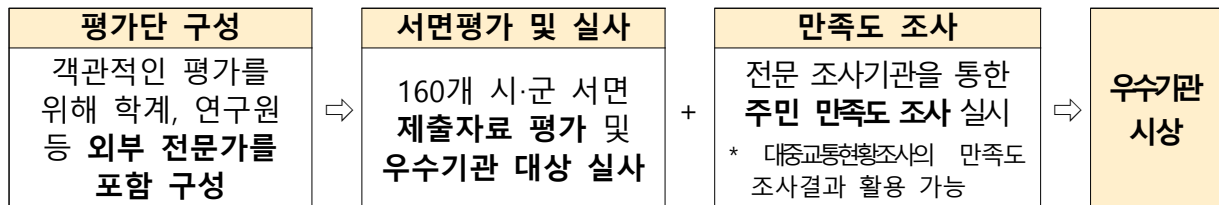
□ 평가개요

- (목적)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 포상,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근거) 대중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07년부터 격년제(홀수년도)로 평가
- (대상) 전국 160개 특별시·광역시, 시 및 군(4개 그룹 분리평가)

- ▶ A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 (7개 시)
- ▶ B그룹 : 인구 30만 이상 중도시(29개 시)
- ▶ C그룹 : 인구 30만 미만 소도시(48개 시)
- ▶ D그룹 : 군(76개 군)

□ 평가내용

- (평가절차) 평가단 구성 → 서면·현장평가 → 이용자 평가 → 시상



- (평가내용) 대중교통 시설, 서비스, 행정 및 정책지원, 이용자 부문

평가부문	평가내용
시 설	대중교통 공급개선, 인프라 확충, 환승체계 구축 등
서 비 스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안전성 제고, 버스운행정보제공율* 등
행정 및 정책지원	교통인력 전문화, 대중교통 수요관리, 투자확대 노력 등
이 용 자	대중교통 이용률, 주민만족도 등
시 책	대중교통 우수시책 추진사례

* (1 * A 정류장 수 + 0.85 * B정류장 수 + 0.7 * C 정류장 수) / 노선버스 정류장 수

A: 정보제공장치 설치된 정류장, B: 스마트폰으로 정보확인 가능한 정류장,

C: 기타방법으로 정보 확인 가능한 정류장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 4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 조회)

① 서산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 단말기의 설치·운용 의 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버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류소에 노선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기준 및 대상과 운행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 지자체에 많은 예산 부담 가중 * 설치예산 : 대당 약 7백만원, 전기공사 별도 비용 소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유지·관리하는데도 많은 행정력과 예산도 소요됨

② 옥천군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 단말기의 설치·운용 의 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버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류소 에 노선버스의 실시간 위 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 내단말기”라 한다)를 설치	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단 말기의 설치·운용 의무) ① ----- ----- ----- ----- ----- ----- ----- ----- <u>설치할</u>	인구소멸지역인 군 단위는 승강 장 50%이상이 일 이용인원 한명 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에 정책의 경제성 실효성이 부족 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비 용 및 관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 되나 국도비 지원규정은 임의규 정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는 강행규정으로 두어 기초자차 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u>하여야 한다.</u>	<u>수 있다.</u>	고 있어 국도비 지원규정과 설치 의무규정을 둘다 임의규정으로 하든지 강행규정으로 하든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③ 인제군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 단말기의 설치·운영 의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버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류소에 노선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13(-----지 원) ① -----설치를 장려하여야 한다.	농어촌지역내의 버스정류장은 하루 버스 운행 횟수가 적으며, 이용객이 적은 상황임.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는 전기와 통신이 필수적으로 수반됨. 농어촌지역과 산간지역에는 전기와 통신이 설치되지 않은 많은 정류장이 존재함. 이와 동시에 매월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발생함. 이에따라 모든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낭비의 우려가 큼.
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기준 및 대상과 운행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모든 정류장에 의무화보다는 설치 장려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농어촌지역 내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에 설치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4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사 유
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운용 의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버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류소에 노선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기준 및 대상과 운행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운용 의무) ① ----- ----- ----- ----- ----- ----- ----- 설치하여야 한다. <u>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 고속형 노선버스는 제외한다.</u>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의 경우 마을버스, 농어촌 지역 또는 협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에 버스 운행정도가 제공되지 않아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임 -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하여 날짜, 시간, 좌석을 예매(기·종점 터미널 및 기·종점의 중간정차 1~2곳)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종점 및 중간정차 출발 시간 홈페이지.모바일 앱 예매 - 노선버스로 개정시 모든 노선 버스사업자가 포함되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호라목 「시외버스운송사업 고속형 제외」 수정 필요 - 또한 자체적인 E-PASS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내 단말기 GPS정보를 활용하여 손님의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안내되고 있는 상태 ○ 예매하면서 승차시간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정하여 이미 안내하고 있으며, 고속형의 경우 평균 265.2km 거리를 운행하는 노선에 노선번호가 아닌 기·종점(예시 서울~부산)과 운송회사 등을 중간정차지에 표출하여야하기에 오히려 혼선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노선버스 명시로 포괄적으로 개정된다면 정류소 안내를 위하여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호환이 가능한 단말기 개발, 설치, 전국 시·도에 시스템연계 등 불필요한 막대한 비용 및 인력투입 발생 김미애 의원의 법 취지 목적에 맞게 노선버스 중 고속형은 제외하여 수정안 시행 - 고속철도·철도와의 지속적인 경합으로 이용객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누적적자(대출·담보 등)로 최악의 경영악화(코로나기간 특별교통 유지 지원 업종 대상에 포함 등)상태로 현재 노선·터미널 폐업, 감차 하고 있는 실정